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상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최상국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조례 근거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개정

-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 제53조,
제54조, 제56조
- 안 제6조제1항 : 제134조 → 제150조
- 안 제6조제2항 : 제41조 → 제49조, 제127조 → 제142조

나.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안 제5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제45조, 제47조”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시회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34조”를 “제150조”로 하고, 제2항중 “제41조”를 “제49조”로, “제127조”를 “제14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53조, 제54조, 제56조 ---- ----- ----- ----- -----.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 ----- -----.
<신 설>	제5조(임시회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제150조- ----- -----. ② ----- 제49조----- -----제142조----- ----- -----.
제6조(준용규정) (생략)	제7조(준용규정) (현행 제6조와 같음)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2021.1.12., 전부개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